

NEWSLETTER 908

Jan 02, 2024

한-이스라엘 FTA 협정관세 적용 생산지역 및 확인을 위한 이스라엘 점령지 및 국경지역 변경 공지

주이스라엘국 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변경된 이스라엘 점령지와 국경지역을 공지하오니 한-이스라엘 FTA 관련 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관련 고시

- 한-이스라엘 FTA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II. 변경내용

- 이스라엘 점령지(*별표1), 국경지역(*별표2)
 - *별표1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 *별표2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지역(국경지역)

III. 참고사항

- 해당 고시 개정 전까지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됨.

I 첨부파일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2(2023.12.27.)

| Contact



차재영 관세사

T 02-6011-3464
E jycha@esein.co.kr



장수한 관세사

T 02-6011-3091
E shjang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